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 되었는데, 동반 가족의 비자도 취소 되는지

주한미대사관은 동반 취소 결정…모두 재발급 받아야

문: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며 작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도 받아 입국했다. 근데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자만 취소된 상황이고 취업비자 신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올해 말 취업비자 동반 신분으로 있는 아내가 한국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때 아내는 한국에서 함께 받은 H-4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답: 동반 가족이 소지한 비자 또한 취소되었다고 감안하고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비자 재발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자 재발급 인터뷰 시 주신청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015년 11월 미 국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유죄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만 된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미국에 체류하는 신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하는데 있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비자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음주 운전 관련 기록이 있을 때 비자를 취소하고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로 생긴 방침인데 주신청자의 비자가 취소 되었을 때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취소되는지에 관한 방침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시 취소되는 것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아니므로 주신청자의 단순 비자 취소가 동반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비자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미국 입장을 가능케 하는 허가이므로 주신청자의 비자 취소가 반드시 동반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기도 어렵다. 왜냐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은 획득했지만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동반 가족만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주신청자의 비자가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함께 취소된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동반가족의 비자가 재발급되려면 주신청자의 비자가 재발급되지 않고서는 재발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 운전 기록은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된 내용이 범죄 관련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비자 재발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비자 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 기록을 명시한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알코올 의존성 판단을 위해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후 대사관은 비자를 재발급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 비자가 재발급되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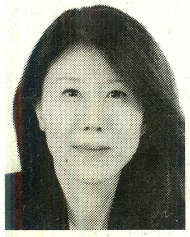

이민
송주연 변호사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거절 후 33일 안에 재심청구나 항소할 수 있어

문: 매해 4월 1일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고 4년째 되던 해인 지난 4월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 지난 9월에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담당 변호사와 자료 준비를 하여 답변 제출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비자 거절율이 매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취업비자는 가장 까다롭게 검토가 된 해로 꼽힐 것이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수료한 특정 전공을 통해 습득한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되는 비자로 규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조건은 명백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관련 학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통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둘째, 관련 업계에서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셋째, 고용주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학위를 보통 요구하거나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해당 학위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매해 적용되는 취업비자 규정은 같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규정이 바뀌어서는 아니다.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양하지만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개의 전공이 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최근에는 특정 전공만을 요구하는 직책만이 취업비자에서 정의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분석가로 취업비자 신청이 되었고 신청자는 마케팅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은 시장조사 분석가로 근무를 하기 위해 주로 요구되는 학위는 마케팅뿐 아니라 경영, 통계학 등 다양한 다른 전공자들도 시장조사 분석가로 근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특정한 한 개의 전공만이 요구되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의 전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취업비자가 신청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주는 주로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고용주의 회사에 같은 직책에 있는 다른 직원 또한 같은 학위를 수료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만일 고용주가 한 명의 직원의 학위 증빙을 한다면 이민국은 한 명의 직원이 같은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용주가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비교 대상이 적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취업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이민국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재심이나 항소는 신청서가 거절 된 후 33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접수비가 요구된다. 재심청구는 이민국의 재심부서로 신청을 하는 절차로 승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항소는 반면 항소위원회로 접수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재심보다 제한 되어 있지만 항소는 법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유리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재심청구나 항소신청의 단점은 급행절차가 없어 신청 후 결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재심청구나 항소신청 중에는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체류가 허가된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시점에는 불법체류를 한 일수가 많아 추후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접수해야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